



# 시 보



제1584호 2023. 2. 20.(월)

## 고 시

- 공인의 폐기 공고----- 2

## 공 고

-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----- 3
-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----- 9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목포시 공고 제 2023 - 303호

### 공인의 폐기 공고

목포시 공인조례 제9조(공고)의 규정에 따라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1. 사 유 :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폐지
- 2. 폐기일 : 2023. 1. 16.(월)
- 3. 수 량 : (폐기) 1개
- 4. 공인명 및 인영

구분	공 인 명	인 영	규격, 서체	비 고
폐기	목포시일자리청년정책과 일상경비출납원인		1.8cm*1.8cm 푸른전남체	

2023년 2월 15일

# 목 포 시 장

목포시 공고 제 2023 - 280호

입 법 예 고

「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년 2월 13일

목 포 시 장

1. 개정사유

- 2023년부터 학교급식 공급가격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 및 Non-GMO 식재료가 적정한 가격과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학생들의 급식만족도 향상을 도모코자 함

2. 주요내용

- 안 제7조(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) 신설

3. 규칙안 및 산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 1

4. 관계법령

- 「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」

5. 관련부서 의견

- 가.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 (감사실) : 해당 없음

- 나. 규제심사(심의) 대상 여부 검토 (기획예산과) : 해당 없음
- 다. 성별영향분석평가 (여성가족과) : 해당 없음

6. 입법예고 : 2023. 2. 20. ~ 3. 12. / 21일간

7. 의견제출

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·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 농업정책과(농업정책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·반대 여부 및 그 사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 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- 1) 전자우편(이메일) : kdh1009@korea.kr
- 2) 주소 : 목포시 양을로 203, 목포시청 농업정책과(농업정책팀)
- 3) 팩스 : 061-270-3587

8. 기타사항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(061-270-3355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[별첨 1]****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**

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 (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에 9명 이내로 구성된 학교급식 공급가격 실무협의회(이하 “실무협의회”라 한다)를 두고, 목포시 담당 팀장과 목포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당연직으로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②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, 해당분야의 특정성별 전문인력 부족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1. 목포시 해당업무 관련 담당 팀장 1명
2. 목포교육지원청 해당업무 관련 담당자 1명
3. 목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 해당업무 관련 담당자 1명
4. 목포 학교급식 업무관련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목포시내 초·중·고등학교 영양(교)사 각 1명
5.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한 학부모 대표 1명
6. 목포시어린이집연합회장이 추천한 1명
7. 친환경식재료를 생산하여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생산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대표 1명

③ 실무위원장은 목포시 담당 팀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실무협의회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을 협의하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되, 학교의 방학기간 등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중 직무와 관련되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.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7조 (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에 9명 이내로 구성된 학교급식 공급가격 실무협의회(이하 “실무협의회”라 한다)를 두고, 목포시 담당 팀장과 목포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당연직으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②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, 해당분야의 특정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목포시 해당업무 관련 담당 팀장 1명</li> <li>2. 목포교육지원청 해당업무 관련 담당자 1명</li> <li>3. 목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 해당업무 관련 담당자 1명</li> <li>4. 목포 학교급식 업무관련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목포시내 초·중·고등학교 영양(교)사 각 1명</li> <li>5.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한 학부모 대표 1명</li> <li>6. 목포시어린이집연합회장이 추천한 1명</li> <li>7. 친환경식재료를 생산하여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생산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대표 1명</li> </ol> <p>③ 실무위원장은 목포시 담당 팀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④ 실무협의회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을 협의하고 회의는 매월 1회</p>

개최하되, 학교의 방학기간 등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중 직무와 관련되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

제7조 (업무의 분담)

제8조 -----

제8조 (지원대상자의 범위)

제9조 -----

제9조 (지원방법)

제10조 -----

제10조 (지원체계)

제11조 -----

제11조 (식재료공급자의 의무)

제12조 -----

제12조 (수당의 지급 등)

제13조 -----

###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

규 칙 명 :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생 년 월 일 :
-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 건	비 고

목포시 공고 제2023 - 321호

입 법 예 고

「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년 2월 20일

목 포 시 장

1. 개정사유

-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안전기준인 주간작업 원칙과 3인 1조 작업원칙에 대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폐기물 시급 처리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예외가 인정됨에 따라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,
- 불연성 폐기물 종량제 봉투 신설과 관련 제작사양(디자인)과 규격을 추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중복된 용어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정의 구분 및 법령 명칭 변경(안 제2조)
-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예외 신설(안 제5조의4)
  - 대규모 행사, 각종 재난 등 일시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이 배출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
  - 적재중량 1.5톤 미만 차량 또는 특수장비(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, 노면청소차량, 암롤차량, 음식물전용수거차량 등)를 사용하여 수거

하는 경우

- 그 밖에 폐기물 종류,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- 쓰레기 봉투의 제작 관련 일반용 봉투를 판매용 봉투(일반용, 재사용, 불연성)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 제작(안 제9조, 제10조, 제12조, 제13조, 제15조, 제16조)

3. 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 1

4. 관계법령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의5제2항
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제1호
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3제2항

5. 관련부서 의견

가.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 (감사실) : 해당 없음

나. 규제심사(심의) 대상 여부 검토 (기획예산과) : 해당 없음

다. 성별영향분석평가 (여성가족과) : 해당 없음

6. 입법예고 : 2023. 2. 20. ~ 3. 12. / 21일간

7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·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 자원순환과(청소행정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·반대 여부 및 그 사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- 1) 전자우편(이메일) : rocust@korea.kr
- 2) 주소 : 목포시 수문로 32, 4층 자원순환과(청소행정팀)
- 3) 팩스 : 061-270-3583

8. 기타사항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(061-270-8561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[별첨 1]****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(안)**

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3호 전단 중 “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소음·진동규제법」”을 “「물환경보전법」 또는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”로 하고,  
제2조 제4호 전단 중 “사업장폐기물”을 “사업장생활계폐기물”로 한다.

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4(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)

- ①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자는 규칙 제16조의3제2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6조의3제2항3호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
  1. 대규모 행사, 각종 재난 등 일시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이 배출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
  2. 적재중량 1.5톤 미만 차량 또는 특수장비(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, 노면청소차량, 암롤차량, 음식물전용수거차량 등)를 사용하여 수거하는 경우
  3. 그 밖에 폐기물 종류,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제9조 제1항 전단 중 “쓰레기봉투는 생활폐기물을 담는 일반용 봉투와 도로변,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는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되”를 “쓰레기봉투는 생활폐기물을 담는 일반용 봉투·재사용 봉투와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담는 불연성 봉투(이하 “판매용 봉투”라 한다.), 도로변·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는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고”로 하고,

제9조 제2항 중 “일반봉투의 색상은 흰색, 공공용봉투의 색상은 옅은 청색”을 “색상은 일반용·재사용 봉투는 흰색 또는 청록색, 불연성 봉투는 투명색, 공공용 봉투는 옅은청색”으로 한다.

제9조 제3항 후단 중 “별표 4,5”를 “별표4, 5, 8, 9”로 한다.

제10조 제1항,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“일반용봉투”를 “판매용 봉투”로 한다.

제12조 제1항 제1호 후단 중 “일반용 쓰레기 봉투”를 “판매용 봉투”로 한다.

제13조 제1항 중 “일반용 봉투판매소”를 “판매용 봉투판매소”로 한다.

제16조 제1항 전단 중 “일반용봉투(타시·군 포함)”을 “판매용 봉투”로 한다.

제18조 제1항 전단 중 “소매업(직접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)을 하고자 하는 자는”을 “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”으로 한다.

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1-별지]

[별표4]

쓰레기봉투의 용량·크기 및 두께  
(제 9조 관련)

구 분	봉투 용량	높이 (cm)	나비 (cm)	두께	입구에서 담는선까지	묶는 끈폭	묶는 끈길이	손잡이 끈 폭(cm)
일 반 용	5ℓ	46.5	26	0.025	13.2	6	10	-
재 사 용 봉 투	5ℓ	41.5	32 (16+8×2)	0.025	14.2	5	10	4
불 연 성 봉 투	5ℓ	46.5	26	0.090	13.2	6	10	-
일 반 용	10ℓ	56.5	33	0.025	15.5	7	12	-
재 사 용 봉 투	10ℓ	53.5	36 (24+6×2)	0.025	16.5	7	12	5
불 연 성 봉 투	10ℓ	56.5	33	0.090	15.5	7	12	-
일 반 용	20ℓ	69.5	42	0.030	18.4	8	15	-
재 사 용 봉 투	20ℓ	65.3	45 (31+7×2)	0.030	19.3	8	15	6
불 연 성 봉 투	20ℓ	69.5	42	0.090	18.4	8	15	-
일 반 용	30ℓ	78.5	48	0.035	20.3	10	17	-
공 공 용 일 반 용	50ℓ	91.5	56	0.040	22.8	12	19	-
공 공 용 일 반 용	75ℓ	103.5	65	0.045	25.7	14	21	-

[별표9]

불연성종량제봉투 제작사양(제9조 관련)

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.



**목포시**

**불연성종량제봉투(20ℓ)**

1. 이 봉투는 타지 않는 쓰레기 전용 봉투입니다.

● 불연성 생활쓰레기 ●

유리류(꽃병, 유리, 거울 등), 자기류(사기 그릇, 화분, 도자기 등), 타일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

2. 종량제봉투(일반용, 재사용)와 구분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.

3. 이 봉투에 음식물 등을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.

※ 쓰레기봉투 배출시간은 일몰후 일출전까지 입니다.

**목 포 시 장**

연락처: 목포시청 자원순환과(☎270-8561)

신 .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“사업장폐기물”이라 함은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소음·진동규제법」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장,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.</p> <p>4. “사업장폐기물”이라 함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</p> <p>----- ----- 「물환경보전법」 또는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-----</p> <p>4. “사업장생활계폐기물”</p> <p>-----</p> <p>제5조의4(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)</p> <p>①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자는 규칙 제16조의3제2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</p> <p>1. 대규모 행사, 각종 재난 등 일시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이 배출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</p> <p>2. 적재중량 1.5톤 미만 차량 또는 특수장비(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, 노면청소차량, 암롤차량, 음식물전용수거차량 등)를 사용하여 수거하는</p>

	경우
<p>제9조(쓰레기봉투의 제작)</p> <p>① <u>쓰레기봉투는 생활폐기물을 담는 일반용 봉투와 도로변,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는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</u>되, 봉투전면에 목포시의 문장, 봉투용량, 용도, 주의사항, 목포시의 명칭 및 연락처,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,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광고 표기를 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투명하게 제작하며, 일반봉투의 색상은 흰색, 공공용봉투의 색상은 옅은청색으로 한다.</u></p> <p>③ <u>쓰레기 봉투의 크기, 용량 및 두께는 중소기업청 단체표준에 의하고 제작사 양은 별표 4,5와 같이 한다.</u></p> <p>④ ~ ⑦ (생략)</p>	<p>3. <u>그 밖에 폐기물 종류,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</u></p> <p>제9조(쓰레기봉투의 제작)</p> <p>① <u>쓰레기봉투는 생활폐기물을 담는 일반용 봉투·재사용 봉투와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담는 불연성 봉투(이하 “판매용 봉투”라 한다.), 도로변·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는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-----, <u>색상은 일반용·재사용 봉투는 흰색 또는 청록색, 불연성 봉투는 투명색, 공공용 봉투는 옅은 청색</u>-----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u>별표 4, 5, 8, 9</u>-----</p> <p>④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)</p> <p>① <u>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업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은 부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10조(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)</p> <p>① <u>판매용 봉투는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수수료의 부과기준)</p>	<p>제12조(수수료의 부과기준)</p>

<p>①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.</p> <p>1. 제2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집 수수료는 <u>일반용 쓰레기 봉투</u> 가격으로 한다.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제13조(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)</p> <p>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<u>일반용 봉투판매소</u>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5조(수수료의 감면)</p> <p>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<u>일반용봉투</u>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<u>일반용봉투</u>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	<p>① ----- -----</p> <p>1. ----- -----<u>판매용 봉투</u>----- -----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<u>판매용 봉투판매소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수수료의 감면)</p> <p>① ----- -----<u>판매용 봉투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② -----<u>판매용 봉투</u>----- ----- -----</p>
<p>제16조(쓰레기봉투의 매수)</p>	<p>제16조(쓰레기봉투의 매수)</p>

① 시장은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(타 시·군 포함)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.

② ~ ③ (생략)

제18조(봉투판매인의 지정)

① 쓰레기봉투의 소매업(직접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)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[별표 4]

**쓰레기봉투의 용량·크기 및 두께**  
(제9조 관련)

구	분	봉투 용량	높이 (cm)	나비 (cm)	두께	입구에서 당는선까지	류는 끈폭	류는 끈길이	손잡이 끈 폭(cm)	
일	반	용	5ℓ	46.5	26	0.025	13.2	6	10	-
재	사	용	5ℓ	41.5	32	0.025	14.2	5	10	4
		봉			(16+8×2)					
불	연	성	5ℓ	46.5	26	0.090	13.2	6	10	-
봉	투									
일	반	용	10ℓ	56.5	33	0.025	15.5	7	12	-
재	사	용	10ℓ	53.5	36	0.025	16.5	7	12	5
		봉			(24+6×2)					
불	연	성	10ℓ	56.5	33	0.090	15.5	7	12	-
봉	투									
일	반	용	20ℓ	69.5	42	0.030	18.4	8	15	-
재	사	용	20ℓ	65.3	45	0.030	19.3	8	15	6
		봉			(31+7×2)					
일	반	용	30ℓ	78.5	48	0.035	20.3	10	17	-
공	공	용	50ℓ	91.5	56	0.040	22.8	12	19	-
일	반	용	75ℓ	103.5	65	0.045	25.7	14	21	-

① -----판매용 봉투-----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봉투판매인의 지정)

① -----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-----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[별표 4]

**쓰레기봉투의 용량·크기 및 두께**  
(제 9조 관련)

구	분	봉투 용량	높이 (cm)	나비 (cm)	두께	입구에서 당는선까지	류는 끈폭	류는 끈길이	손잡이 끈 폭(cm)	
일	반	용	5ℓ	46.5	26	0.025	13.2	6	10	-
재	사	용	5ℓ	41.5	32	0.025	14.2	5	10	4
		봉			(16+8×2)					
불	연	성	5ℓ	46.5	26	0.090	13.2	6	10	-
봉	투									
일	반	용	10ℓ	56.5	33	0.025	15.5	7	12	-
재	사	용	10ℓ	53.5	36	0.025	16.5	7	12	5
		봉			(24+6×2)					
불	연	성	10ℓ	56.5	33	0.090	15.5	7	12	-
봉	투									
일	반	용	20ℓ	69.5	42	0.030	18.4	8	15	-
재	사	용	20ℓ	65.3	45	0.030	19.3	8	15	6
		봉			(31+7×2)					
불	연	성	20ℓ	69.5	42	0.090	18.4	8	15	-
봉	투									
일	반	용	30ℓ	78.5	48	0.035	20.3	10	17	-
공	공	용	50ℓ	91.5	56	0.040	22.8	12	19	-
일	반	용	75ℓ	103.5	65	0.045	25.7	14	21	-

<신 설>

[별표 9]

불연성종량제봉투 제작사양(제9조 관련)



**목포시**

**불연성종량제봉투(20ℓ)**

1. 이 봉투는 타지 않는 쓰레기 전용 봉투입니다.

● 불연성 생활쓰레기 ●

유리류(꽃병, 유리, 거울 등), 자기류(사기 그릇, 화분, 도자기 등), 타일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

2. 종량제봉투(일반용, 재사용)와 구분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.
3. 이 봉투에 음식물 등을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.

※ 쓰레기봉투 배출시간은 일몰후 일출전까지입니다.

**목 포 시 장**

연락처: 목포시청 자원순환과(☎270-8561)

###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

규 칙 명 :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생 년 월 일 :
-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 건	비 고